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의 업무협력 협약서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 이라 한다.)과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여성기업 지원 및 상호간의 업무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양 기관의 상호 유기적인 업무협력을 통하여 여성기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협력분야) 상호 협력을 위한 범위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진흥원은 공공기관으로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공공기관의 우선구매)에 의거한 여성기업제품 구매목표 달성을 위해 적극 협조한다.
2. 협회는 여성기업에 대한 원활한 지원을 위해 협회 가입 회원(이하 "회원")에 대한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진흥원에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3. 진흥원과 협회는 여성기업의 발굴·육성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에 적극 협력한다.
4. 진흥원과 협회는 본 협약에 의한 여성기업의 지원제도가 확대·발전되도록 노력하며, 이를 위해 상호간 긴밀한 협의를 한다.
5. 진흥원과 협회는 콘텐츠공제조합 설립 및 성공적 운영을 위해 상호간 협력한다.

제3조(비밀유지) 본 협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내용 중 상호 비밀을 유지하기로 한 사항은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개가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사전 협의한다.

제4조(발표 및 유효기간)

- ① 본 협약서는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그 유효기간은 협약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 ②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게 협약 해지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1년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5조(기타사항) 본 협약의 목적 및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추후 결정한다.

본 협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지키고자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뒤 1부씩 보관한다.

2013년 4월 17일

한국콘텐츠진흥원



원 장 홍 상 표

홍 상 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KOREAN WOMEN ENTREPRENEURS ASSOCIATION

회 장 이 민 재

이 민 재